#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462 |
|---|---|

제출일자 : 2024. 3. 11.
제 출 자 : 달성군수

## 1. 제안이유

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및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조정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

- 팀 단위 개정사항

· 안 제8조제2항제8호 : 공공시설·기계전기 → 공간기획·공공시설

· 안 제9조제2항제1호 : 문화예술·문화시설·문화재 → 문화예술·문화시설·국가유산

## 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
(2)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,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4. 2. 8. ~ 2. 28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　　호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8호 중 “공공시설·기계전기”를 “공간기획·공공시설”로 한다.
제9조제2항제1호 중 “문화예술·문화시설·문화재”를 “ 문화예술·문화시설·국가유산” 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8조(건설도시국)②건설도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br>8. 공공시설·기계전기에 관한 사항 | 제8조(건설도시국)②----------.<br>8. 공간기획·공공시설-------. |
| 제9조(문화관광국)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<br>1. 문화예술·문화시설·문화재에 관한 사항 | 제9조(문화관광국)②----------.<br>1. 문화예술·문화시설·국가유산-------. |

| 참고 |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 |
|---|---|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· 자격 · 보수 · 복무 · 신분보장 · 징계 · 교육 ·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**제13조(시 · 군 · 구의 기구설치기준)** ① 시 · 군 · 구 본청의 실 · 국이나 과 · 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 · 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 · 군 · 구 본청에 두는 실 · 국이나 실 · 과 · 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 · 군 · 구 본청의 실장 · 국장과 과장 · 담당관의 직급과 실 · 과 ·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는 관할 시 · 군 ·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실 · 국과 실 · 과 · 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 · 도와 시 · 군 · 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 · 군 · 구의 실장 · 국장 · 담당관 · 과장 등의 직급기준)**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장 · 국장 · 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 · 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.